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433

발의연월일: 2022. 7. 13.

발 의 자:김상훈·김미애·박 진

배준영 · 엄태영 · 윤재옥

이명수 · 이채익 · 정경희

조명희 · 홍문표 의원

(11일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, 그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6%, 중견기업 8%, 중소기업 16%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 등의 기술분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 기업과 같은 수준인 8%로 상향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산업강국으 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 제2호).

법률 제 호

#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 중 "100분의 6(중견기업은 100분의 8, 중소기업은 100분의 16)"을 "100분의 8(중소기업은 100분의 16)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	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
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	
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	
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	
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	
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	
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	
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	
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	
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	
법인세에서 공제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공제금액	2
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	가
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	
00분의 1(중견기업은 100	
분의 3, 중소기업은 100분	
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.	
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	
구부에 따르 근앤ㅇㄹ 하	

다.

- 1) (생략)
- 2)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 자하는 경우: 100분의 6(중 견기업은 100분의 8, 중소 기업은 100분의 16)에 상 당하는 금액

나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2)	1) (연행과 같음)
	2)
소기업은 100분의 16)	<u>100분의 8(중</u>
	소기업은 100분의 16)

나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